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

심 사 보 고 서

의안 번호	519

2021. 11. 24.
운영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1. 11. 4. 이도희 의원 등 6명

나. 상정의결

- 제299회 강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(2021. 11. 24.)

“ 수정가결 ”

2. 제안이유(제안설명 : 대표발의자 이도희 의원)

○ 상위법령인 「지방자치법」의 전부개정으로 지방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한 윤리특별위원회 설치가 의무화 됨에 따라,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을 마련하여 의정활동의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가. 목적, 구성 등에 관한 사항(안 제1조～제2조)

나.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·운영, 의견수렴 등에 관한 사항(안 제3조～제3조2)

다. 위원회 개회의 통지, 심문, 발언 및 변명, 증빙서류 등의 제출 등에 관한 사항(안 제4조～제7조)

라. 통지, 제척과 회피, 위원회에 두는 공무원, 위임 등에 관한 사항(안 제9조～제11조)

4. 관련근거 및 참고사항

가. 관계법규 : 「지방자치법」 제65조(윤리특별위원회), 제66조(윤리심사자문위원회)

나. 예산조치 : 별도 조치 필요 없음

다. 입법예고 : 해당 없음

5.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: 김효섭)

○ 지방자치법에서 전부 개정된 내용을 보면 아래 표와 같음

◈ **지방자치법**

현 행	개 정 안
제57조(윤리특별위원회) 의원의 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.	**제65조(윤리특별위원회)** ① 지방의회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---------- 둔다.
<신 설>	② 제1항에 따른 윤리특별위원회(이하 “윤리특별위원회”라 한다)는 지방의회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지방의회의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전에 제66조에 따른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.
<신 설>	제66조(윤리심사자문위원회) ① 지방의회의원의 겸직 및 영리행위 등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장의 자문과 지방의회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윤리특별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둔다.

	②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위원은 민간 전문가 중에서 지방의회의 의장이 위촉한다.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으로 정한다.

○ 안 제65조 제1항을 보면 윤리특별위원회를 “둘 수 있다” 에서 “둔다”로 개정되어 의무규정으로 상설로 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며, 신설된 제2항 및 제66조에서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, 자문을 듣도록 하였음

○ 따라서, 금번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 제정은 상위법령의 이행사항을 준수하는 내용으로 적절하다 보여짐

○ 참고로,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개정도 같은 맥락으로 보여짐

○ 다만, 제정안 내용중 일부 수정이 필요하다 사료됨

◈ 수정의견(안)

제 정(안)	수 정(안)
제3조(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·운영) (생략)	<삭제>
제4조(의견수렴) (생략)	<삭제>
제5조(위원회 개회의 통지) (생략)	**제3조** (제정안 제5조와 같음)
제6조(심문) (생략)	**제4조** (제정안 제6조와 같음)
제7조(발언 및 변명) (생략)	**제5조** (제정안 제7조와 같음)
제8조(증빙서류 등의 제출) (생략)	**제6조** (제정안 제8조와 같음)
제9조(통고) (생략)	**제7조** (제정안 제9조와 같음)

제10조(제척과 회피) (생략)	**제8조** (제정안 제10조와 같음)
제11조(위임) (생략)	**제9조** (제정안 제11조와 같음)
<신설>	**제10조(윤리심사자문위원회 구성)** ① 위원회는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윤리특별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윤리심사자문위원회(이하 "자문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 ②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위원은 7명 이내의 민간전문가로 구성하며,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 ③ 자문위원회 위원은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 관련 분야에서 전문성과 공정성을 갖춘 자로 학계·법조계·언론계·시민사회단체 등이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. ④ 자문위원회 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. 다만 의장은 자문위원회 위원에게 질병, 장기여행, 중도 사퇴, 품위손상, 그 밖에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. ⑤ 자문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자문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 ⑥ 자문위원회 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의장은 지체없이 새로운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. 이 경우 후임으로 위촉된 자문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<신설>	**제11조(윤리심사자문위원회 운영)** ① 자문위원회는 위원장의 요구가 있거나 자문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자문위원장이 소집한다. ② 자문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자문에 참여할 수 없다. 1.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위원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2.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

	3.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에게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·진술·자문·연구·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. 기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·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③ 자문위원회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위원회의 업무로 출장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<신설>	**제12조(의견수렴)** 위원회는 윤리심사 또는 징계·자격심사 전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, 그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.

6. 질의 및 답변 요지

○ 질 의 : 윤리특별위원회가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도록 되어 있는데, 양 위원회가 상충되는 것은 아닌지

○ 답 변 : 상충된다기보다는 자문위원회에서 다른 의견이 나오더라도 서로 보완하여 오히려 시너지효과가 날 수도 있다고 생각함

○ 질 의 : 자문위원 심사수당은 어떻게 지급할 것인지

○ 답 변 : 수정안을 통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는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, 지급액은 행안부 기준에 따르겠음

○ 질 의 : 윤리특별위원회가 상설화되면 상임위원회가 늘어나는 것인지

○ 답 변 : 특별위원회가 상설화되는 것일 뿐, 상임위원회의 지위는 아님

7. 토론 요지

○ 토론과정 중, 일부 조문을 수정하자는 수정동의안이 제출됨

8. 심사 결과 : “수정가결”

9. 소수의견의 요지 : “없음”

10. 기타 사항 : “없음”

붙임 1.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에 대한 수정안 1부
2.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 1부.

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에 대한

수 정 안

관련의안번호
제519호

제안일자 : 2021. 11. 24.

제 안 자 : 운영위원장

1. 수정이유

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하여 조문을 분리하고, ‘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’에 따라 조문의 순서를 수정함

2. 수정내용

가. 위원의 추천자격, 연임 및 위촉해제, 회의 소집, 심의수당 등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하고자 조문을 분리하여 신설함(안 제3조)

나. ‘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’에 따라 조문의 순서를 수정함(안 제4조부터 안 제11조까지)

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에 대한

수 정 안

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3조를 삭제한다.

안 제4조를 안 제12조로 한다.

안 제5조부터 안 제10조까지를 각각 안 제3조부터 안 제8조까지로 한다.

안 제11조를 안 제9조로 한다.

안 제10조부터 안 제11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0조(윤리심사자문위원회 구성) ① 위원회는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윤리특별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윤리심사자문위원회(이하 “자문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②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위원은 7명 이내의 민간전문가로 구성하며,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
③ 자문위원회 위원은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 관련 분야에서 전문성과 공정성을 갖춘 자로 학계·법조계·언론계·시민사회단체 등이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.

④ 자문위원회 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

있다. 다만 의장은 자문위원회 위원에게 질병, 장기여행, 중도 사퇴, 품위손상, 그 밖에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.

⑤ 자문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자문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⑥ 자문위원회 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의장은 지체없이 새로운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. 이 경우 후임으로 위촉된 자문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
제11조(윤리심사자문위원회 운영) ① 자문위원회는 위원장의 요구가 있거나 자문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자문위원장이 소집한다.

② 자문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자문에 참여할 수 없다.

1.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위원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

2.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

3.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에게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·진술·자문·연구·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

4. 기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·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

③ 자문위원회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위원회의 업무로 출장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수정안 조문대비표

원 안	수 정 안
제3조(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·운영) ① 위원회는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윤리특별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둔다. ②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위원은 7명 이내의 민간전문가로 구성하며,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 ③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위촉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한다. ④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자문에 참여할 수 없다. 1.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위원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2.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	<삭 제>

3.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에게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·진술·자문·연구·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. 기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·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	
제4조 (생 략)	제12조 (원안 제4조와 같음)
제5조 ~ 제10조 (생 략)	제3조 ~ 제8조 (원안 제5조부터 제10조까지와 같음)
제11조 (생 략)	제9조 (원안 제11조와 같음)
<신 설>	제10조(윤리심사자문위원회 구성) ① 위원회는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윤리특별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윤리심사자문위원회(이하 “자문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 ②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위원은 7명 이내의 민간전문가로 구성하며,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 ③ 자문위원회 위원은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 관련 분야에서 전문성과 공정성을 갖춘

	자로 학계·법조계·언론계·시민사회단체 등이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. ④ 자문위원회 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. 다만 의장은 자문위원회 위원에게 질병, 장기여행, 중도 사퇴, 품위손상, 그 밖에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. ⑤ 자문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자문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 ⑥ 자문위원회 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의장은 지체없이 새로운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. 이 경우 후임으로 위촉된 자문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<신 설>	제11조(윤리심사자문위원회 운영) ① 자문위원회는 위원장의 요구가 있거나 자문위원장이 필요하

	다고 인정할 때 자문위원장이 소집한다. ② 자문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자문에 참여할 수 없다. 1.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위원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2.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3.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에게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·진술·자문·연구·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. 기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·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③ 자문위원회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위원회의 업무로 출장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

(이도희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	519

발의연월일 : 2021. 11. 4.
발 의 자 : 이도희·이향숙·박다미·복진경·이재진·허순임 (이상6인)

1. 제정이유

「지방자치법」 전부개정('22. 1. 13. 시행)으로 윤리특별위원회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을 마련하여 지방의회 의정활동의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목적, 구성 등에 관한 사항(안 제1조～제2조)

나.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·운영, 의견수렴 등에 관한 사항 (안 제3조～제3조2)

다. 위원회 개회의 통지, 심문, 발언 및 변명, 증빙서류 등의 제출 등에 관한 사항(안 제4조～제7조)

라. 통지, 제척과 회피, 위원회에 두는 공무원, 위임 등에 관한 사항 (안 제9조～제11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규

1) 「지방자치법」 제65조(윤리특별위원회) ① 지방의회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.

② 제1항에 따른 윤리특별위원회(이하 “윤리특별위원회”라 한다)는 지방의회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지방의회의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전에 제66조에 따른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.

2) 「지방자치법」제66조(윤리심사자문위원회) ① 지방의회의원의 겸직 및 영리행위 등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장의 자문과 지방의회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윤리특별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둔다.

②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위원은 민간전문가 중에서 지방의회의 의장이 위촉한다.

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으로 정한다.

나. 예산조치 : 별도 조치 필요 없음

다. 입법예고 : 해당 없음

서울특별시 강남구 규칙 제　　호

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

제1조(목적) 이 규칙은「지방자치법」제65조의 규정에 의한 윤리특별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구성)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제3조(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·운영) ① 위원회는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윤리특별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둔다.

②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위원은 7명 이내의 민간전문가로 구성하며,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
③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위촉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한다.

④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자문에 참여할 수 없다.

1.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위원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

2.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

3.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에게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·진술·자문·연구·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

4. 기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·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

제4조(의견수렴) 위원회는 윤리심사 또는 징계·자격심사 전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, 그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.

제5조(위원회 개회의 통지) 위원장은 윤리심사 또는 징계·자격심사를 위하여 위원회를 개회할 때에는 그 개회일시와 장소 등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1. 윤리심사 또는 징계·자격심사를 청구하거나 요구한 의장·위원장 및 의원(이하 "심사요구의원"이라 한다)

2. 윤리심사 또는 징계·자격심사대상자(이하 "심사대상의원"이라 한다)

제6조(심문) 위원회는 윤리심사대상자 또는 징계대상자와 관련의원을 출석요구하여 심문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개회일 3일전까지 출석요구서를 송달하여야 한다.

제7조(발언 및 변명) ① 심사요구의원 또는 심사대상의원이 발언하거나 변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심사대상의원이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에서 발언 또는 변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의원의 성명과 발언 또는 변명의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③ 위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발언 또는 변명의 방식을 서면이나 구두 중 어느 하나로 결정하여 심사대상의원에게 통지한다.

제8조(증빙서류 등의 제출) 심사대상의원 또는 심사요구의원은 위원회의 심사에 필요한 증빙서류·해명자료 등을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.

제9조(통고) 위원회가 의결한 내용을 알릴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되, 그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. 다만, 필요한 경우 위원회는 해당 의원에게 출석을 요구하여 구두로 알릴 수 있다.

제10조(제척과 회피) ① 위원은 윤리심사 또는 징계·자격심사에 관한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,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.

② 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결로 해당 위원의 심사를 중지시킬 수 있다.

제11조(위임)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「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위원회 조례」 및 「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회의규칙」과 위원회의 의결에 따른다.

부칙

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.